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기 덕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4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대기업 중심의 온라인 상거래,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이 낮은 수의계약 (2018년도 기준 1조 원 가량)에도 소상공인 거래는 2천억 원에 불과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공공 영역에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에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 촉진과 구조개선 등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

에게 포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과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13조의2) 것입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